

동신초등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의견 조사

안녕하세요? 봄꽃 향기가 가득한 4월입니다.

동신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2017년 2월 16일에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동신초등학교생활규정 전체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듯해서 학생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이를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고,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좀 더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학생생활규정 내용 중 실제 학교생활과 관련이 적거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의견과 학생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은 **학생 생활교육의 토대**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신초등학교생활규정 일부 발췌 내용>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 절차로 제정하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등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 30조 및 제 31조, 제 32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관련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 【학습에 관한 권리】 (인권조례 5조)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인권조례 13호)

- ① 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제31조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충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3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며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4. 학부모 통보 및 상담
5. 기타 학급 내에서 학생과 교사가 협의 하에 정한 규칙에 의한 교육적 조치

제34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5조 【징계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행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6조 【징계의 심의원칙】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 정지 :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등교정지)를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동신초등학교생활규정 외 추가 내용>

1. 관련조항 <제 7조> 기본품행. 학교에서 학생이 입술보호제나 자외선차단제 외에 색조 화장
2. 관련 조항 <제 35~42조> 징계. 학생의 문제행동이 계속되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5단계 교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교실 안에서 담임교사가 교육 -2단계: 학급 봉사활동 -3단계: 상담교사 교육 -4단계: 3단계까지 3회 이상 반복해 생활교육 했으나 변화가 없는 경우 학부모 상담 -5단계: 교사협의체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
|--|

2019년 4월 2일

동 신 초 등 학 교 장

<절 취 선>

동신초등학교생활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 회신서

동신초등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특히 학생의 색조 화장, 학교에서의 핸드폰 사용,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5단계 교육 등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이 없을 때는 생략 가능함.)

동신초등학교장 귀하